

☎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삼구빌딩 7, 8층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48/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장 이성민 [6574] 보험팀장 백영기 [6581] 팀원 서예진 [6548]/E-mail: 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0813-16129호

시행일자 2021. 03. 31.

수 신 대한의학회장, 각시도의사회장, 각전문과목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
각과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일부개정 안내

1. 관련근거 :

-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-102호(2021.03.30.)

2. 위와 관련, 보건복지부에서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3항 및 제4항,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5조제2항에 의한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하여, 이를 안내드립니다.

- 다 음 -

가. 주요개정내용

1) 신의료행위 목록 신설*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 및 급여기준 개정

* 비타민(25-OH-Vitamin D) 등 검체검사 세부항목 신설 및 D-dimer검사 급여기준 등 11항목 개정

2) 급여기준 개선으로 두 개강내 신경자극기 설치술 급여대상의 문구 명확화

나. 시행 예정일 : 2021.4.1.부터

붙임 : 복지부 개정 고시문 1부. 끝. 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